〈서식-5〉 격 리 면 제 서

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(해당, 미해당)

격리면제자	성명 임진선	성별 남
	국적 대한민국	생년월일 1982-02-05
	여권번호 M28453877	휴대전화(본인) +353 87 211 9531
	체류자격(외국인만) 내국인	한국내 긴급연락처 (초청기업, 가족 등)
	한국내 주소(상세기재)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 주공2	단지 1104호 (전화: 010-7712-6502)
	직업(직장/직위명)	초청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
	출발국가 아일랜드	출발일 및 편명
	입국예정일 2021-11-21	격리면제 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
	출국예정일 2021-12-11	행사장소(장례식장 등) 인천, 서울
격리 면저 사유		<u>·</u>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후 14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, 담당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허가합니다.

※ 주의사항

- 동 면제서는 1회에 한해 인정되며,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
점부서류 ※ 격리면제신청서 중 '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' 뒷면 첨부

-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에 적합하게 발급받은 PCR음성확인서(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)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은 중단됩니다.
- 대한민국 입국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(최대 1박2일 대기), 음성일 시 격리가 면제됩니다.
 - *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과대기
- <u>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또는 접촉자(감염병의심자)로 분류될 경우 면제</u>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되며, 기존 격리수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입국 전 14일 이내에 베타형·감마형·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(기지정 또는 신규지정)에 체류·출국·경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제서 효력은 즉시 중단됩니다.
- 입국 후에는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해야 합니다.



- 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, 6~7일 사이 진단검사를 실시(국비지원)하고 그 결과(음성확인서)를 8일이내 심사부처 및 주소지 소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되고 즉시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격리면제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 및 방역계획 대로 이행 (<u>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</u>) 해야 하며, 필요시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 면제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격리조치되며,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.
- 동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불허되거나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할 경우, 면제서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, 신고한 후 방역절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(자기부담 최대15만원) 격리해야 합니다.

격 리 면 제 서 발 급 자 (직급)

3등서기관

(성함)

신지홍

(연락처 / 이메일)

01-660-8800 jhshin13@mofa.go.kr

2021 년 11 월 02 일

주아일랜드대한민국 대사관







